

유럽 HPAI 발생 급증, 국내 겨울 철새 유입 비상

글쓰는 순서

Part I 겨울 철새 통한 HPAI 국내 유입 비상

Part II 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SI 검사 계획

Part III SI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새유입 고려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시 검사 계획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차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HPAI로 인해 오리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도 겨울 철새가 돌아오는 계절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HPAI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야생철새에서 HPAI가 지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국내유입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유럽에서 시 발생 건수가 1천 건이 넘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생 유형도 6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국내에 유입되는 겨울 철새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겨울 철새 대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방역당국은 HP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 검사 계획을 세우고 축종별 사육 주기 및 주요 유통경로를 고려해 정기검사를 통해 감염축 조기 발견으로 시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위험 시기별 검사 빈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여건 조성하고 과학적·체계적 방역 추진 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part I

겨울 철새 통한 HPAI 국내 유입 비상

상반기 유럽 AI 발생건수 44배 증가
바이러스 유형도 6종으로 확대

유럽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는 1139건으로, 26건이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44배 급증했다. 아시아에서도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3.1배 늘어난 44건(7개국)이 발생했다.

AI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H5N8형만 나왔지만, 올해는 H5N8·H5N1·H5N5·H5N4·H7N7 등 6종의 바이러스 유형이, 아시아에서는 4종의 유형이 확인됐다.

이처럼 유럽 야생조류에서 AI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중국 등에서 발생 중인 H5N1·H5N5·H5N6형 바이러스는 닭 폐사율이 높고 다른 닭으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 예찰이 중요하다. 또 유럽에서 검출된 H5N8형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폐사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리는 감염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2016~2017년에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해 8개월 동안 가금농장 419곳에서 AI가 터지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 농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0월~2022년 2월) 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 시설 현장점검과 함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함께 시행한다. 또 2020·2021년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에서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 유입되는 AI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야생철새에서 AI 발생 시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PAI 방역대책 취약점 개선>

시설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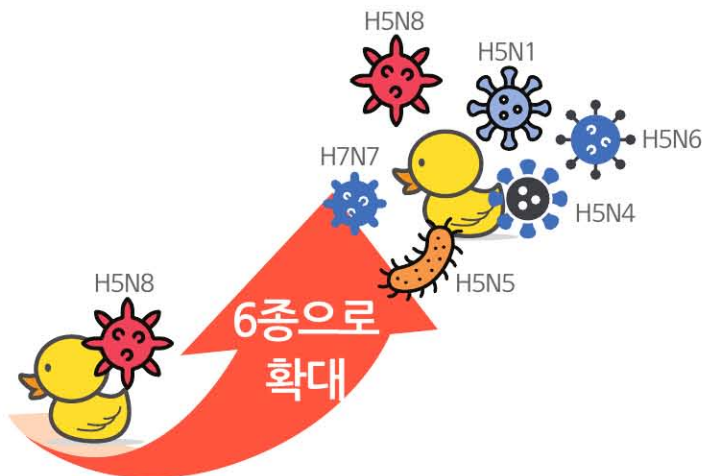
전국 가금농장(4,900여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병행 실시

방역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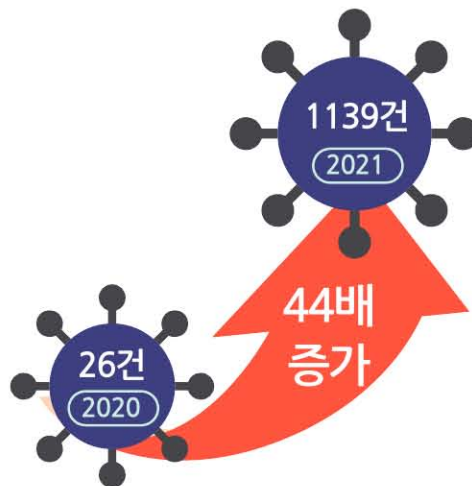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 대상 방역수칙 주기적으로 홍보·교육

제도개선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 조치를 위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 정비





<유럽 검출 바이러스 유형>



<상반기 유럽 HPAI 발생건수>

시 방역 취약점과 개선조치

시설분야

	미흡	개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외부 울타리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외부 울타리 설치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전실 설치·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출입구마다 전실 설치·운영 - 대인소독 및 축사 내외부 신발갈아신기 실시

관리분야

	미흡	개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출입 시 대인소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출입 시마다 대인소독, 내부용 신발(장화) 착용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동기구 방역관리 미흡(분동기구 외부보관 및 사용전/후 세척·소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동기구 내부 보관, 사용전/후 세척·소독, 분동통로에 비닐 바닥 깔기

사육 주기 및 주요 유통경로 감안 위험시기별 검사 빈도 조정

고병원성 A/H5N1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시 검사 계획이 조정됐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10월부터 다음 해 2월로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현재 비교적 발생위험이 적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조정 검사계획 적용 시기는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조정된 검사 방안은 고병원성 A/H5N1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시기별로 시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축종별 사육 주기 및 주요 유통경로를 고려해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감염축 조기 발

견으로 시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위험 시기별 검사 빈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고병원성 A/H5N1 발생은 겨울철 A/H5N1 발생국에서 도래하는 철새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 검사는 기존 상시 예찰 수준에 따라 시행하되, 겨울 철새의 도래 시기(21.10월 예상) 이후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방역 취약 축종으로 분류되는 산란 가금과 토종닭, 오리류는 평시에도 시 감염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조정 세부내역>

가금 축종	기존('21.6.1.~)	변경('21.8.17.~9.30.)	비고
산란계	2월 1회 + 출하 전 * 환경검사 병행 * 중추 2월 1회 검사 실시	분기 1회 * 노계 출하 전 포함	이동승인서 발급 * 농장간 이동 시(노계)에 한함
중계	2월 1회 + 출하 전 * 환경검사 병행 * 중추 2월 1회 검사 실시	분기 1회 * 노계 출하 전 포함	이동승인서 발급 * 농장간 이동 시(노계)에 한함
메추리	2월 1회 + 출하 전 * 환경검사 병행	분기 1회 * 출하 전 포함	-
육계	4월 1회 * 환경검사 병행	-	-
토종닭	2월 1회 + 출하 전* * 전통시장 출하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으로 이동 시에 한함 ** 환경검사 병행	출하 전 * 전통시장 출하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으로 이동 시에 한함	이동승인서 발급
종오리	월 1회 * 환경검사 병행	분기 1회 * 출하 전 포함	-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25일령) + 출하 전 * 출하전 빈축사 환경검사 병행	출하 전	이동승인서 발급
* 축산시설·차량 환경검사 : (도축장) 주 1회, (가금거래상인 차량) 분기 1회			

※ 이동승인서는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간 유효

※ 검사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수행(시·도 시험소와 조율)

part III

시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여건 조성 과학적·체계적 방역 추진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과정에서의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효과적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 방역지역(보호지역, 500~3km) 내 방역조치 조정,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기준 조정, 위험시기 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정, 역학 대상 방역관리 보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 (안 제19조 제1항, 별표 10)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정 및 안을 추가했다.



방역지역(보호지역, 500~3km) 내 방역조치 조정 (안 제22조)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살처분 대상이 아닌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반출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방역조건을 추가했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기준 조정 (안 제33조)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을 기존 방역지역 해제 시에서 예찰지역 전환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로 조정했다.



위험시기 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정 (안 제7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이동 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 대상 방역관리 보완 (안 별표5)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하여 확산 차단을 위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하도록 개정안에 차량관련 운행조항을 추가했다.